

『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7년 5월 22일

나. 발 의 자

임춘구 의원, 우진석 의원, 김도문 의원, 정근수 의원,
김영호 의원, 황경환 의원, 장세만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5월 25일

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임춘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,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의 변화 등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·농촌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,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농업·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,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, 건전소비 등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 (안제3조)
-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정참여 보장 및 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시장이 지역농업 육성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5조 내지 제9조)
- 농정의 입안과 예산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(안 제10조)
-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협의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함 (안 제11조 내지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,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의 변화 등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·농촌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,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, 건전소비 등 시장과 농업인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
-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정참여 보장 및 협력 사항을 정하고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- 또한 농정의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하고
-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협의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